『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작성 서식 및 예시

\square 70 $^{\prime}$ 17		작성	서	식
-----------------------------	--	----	---	---

접수부서에서 작성

① 대국민 공모용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44-205-0000	1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대국민 공모용)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명	(1 7		연락처		010	-0000-0000
E-mai	i			지역			
2. 제안 니	내용						
분 야	①국	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쇼핑·중소업·원			⑤신산업
제목							
관련법령			법령, 제도 및 지	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	수부서에서	서 확인, 작성				
현황 및	0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	를게 기재			
문제점	0 🛨	참고) 현정	당사례 및 설명지	h료 반드시 작성	ļ		
개선	0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	를게 기재			
방안	0						
기대	O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호과 O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 작성 예시

① 대국민 공모용

	관리번호			
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연락처	044-123-1234	1
(부서)	(규제혁신과)	한국시	044-123-1234	I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대국민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지	(일반	국민 🗹 /	'공무원 □)				
성명			나성실	연락처		010-1231-1234	
E-mai	I	na@	namu.com	지역		전라	남도 보성군
2. 제안 l	내용						
	①국	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4살만!	중21111	⑤신산업
분 야							
제 목	스케임	일링 의료	보험 적용 주기	를 회계연도 기	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l			에 관한 규칙 저 건복지부 고시 7			한 적용기준
소관기관	보건복	^복 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3월 일

제안자 :나성실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사례-생수병 비닐라벨 관련 현황자료〉

1. 먹는물관리법 제2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9호, 시행 2019. 6. 2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생수 시장 점유율 1위 삼다수의 지나친 수준의 평균판매가격

삼다수 2L 판매가 대비 이익률 지나치게 높아

생수의 제조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삼다수의 제조업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3개년도 손익계산서를 활용했다. 2017년 재무제표상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제조원가로 가정, 제품매출원가를 판매량으로 나눠 단위당 원가로 환산했다.

또 유통업체 납품 이후의 부분은 삼다수의 유통사인 광동제약의 2017년 재무제표 상 판매비와 관리비(이하 판관비)를 판매량으로 나눠 단위당 판관비를 환산했다. 그 결과 삼다수의 유통 이전 제조 원가는 2L당 약 414원, 유통 이후 원가라 할 수 있는 단위당 판관비는 약 114원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다수의 추정원가는 2L당 약 529원이고, 평균판매가격은 1165원이므로 이익률은 54%로 추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재무상태로 비교해 보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7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음료업계 제품원가율이 56%, 영업이익률은 10%인 것에 비하면 앞에서 추정된 삼다수의 추정 이익률은 동종업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가격인하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삼다수는 출고가를 6~10% 인상했다. 그러나 삼다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주요 원재료 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매출원가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판매단가 변동 없이 매출액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이익률은 변동이 없었다.

협의회 측은 "원자재가격상승을 이유로 단행한 이번 가격 인상폭은 검토결과 과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역 공사로서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업계 선두 브랜드인 삼다수는 생수의 성분을 통한 기능적 차별성과 가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번 원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과 과도한 홍보활동 생수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료업계 영업이익률은 10%, 삼다수는 54%

-같은 수원지임에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http://m.bokuennews.com/m/m_article.html?no=168941

〈사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생략)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 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1. <u>다음</u>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 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 로 본다.	1. <u>단지별 다음</u>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u>휴·폐업업체</u> 가 입주업체수의 100분 의 10이상인 경우	2. <u>단지별 휴·폐업업체</u>
3. <u>분양대상면적</u> 의 100분의 90이상에 해 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 지 않는 경우	3. <u>단지별 분양대상면적</u>